

##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9. 4.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98. 9. 5

다. 상정일자 : 98. 9. 14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내무과장 최영옥

나. 개정사유

- 문화재 관리와 향토사료 발굴 및 보존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별정직(7급) 승인에 따른 임용 범위를 조정하고,
-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별정직 공무원 임용범위 확대
  -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농기계교환, 보건진료원, 비서, 가정복지담당문화재관리원, 사회복지과장, 의회전문위원 등
-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으로 정함.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문화재 관리를 위한 별정직 정원의 승인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한 것은 좋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②항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금번 지방조직 개편 지침중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정비지침에도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등은 일반직화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새로이 별정직 임용범위로 추가된 「가정복지담당」 「사회복지과장」 등을 굳이 별정직 임용 범위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상위법규관련, 개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법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녀상담원
  2. 아동복지지도원
  3. 농기계 교관
  4. 사회복지 전문요원
  5. 보건진료원
  6. 비서
  7. 가정복지담당
  8. 문화재관리원
  9. 사회복지과장
  10. 의회전문위원

제4조 제2항 단서중 '비서관 또는 비서'를 '비서'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군수가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군수가 따로 저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